

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(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)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처분 사전통지)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,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9. 4.

전 주 시 완 산 구



1. 공고기간 : 2026. 9. 4. ~ 9. 18.(14일)
2. 공고장소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공고사항
 - 처분내용 :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
 - 처분사유 :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함
 - 법적근거 :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2항
 - 처분대상 : 붙임 명단 참조
4. 의견제출
 - 제출기간 : 2026. 9. 4. ~ 9. 18.
 - 제출장소 : 완산구청 5층 산업교통과 (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)
(Tel. 063-220-5353, Fax. 063-220-5536)
 - 제출대상 : 본인 또는 대리인 (위임장, 신분증, 도장 지참)
 - 제출방법 : 서면(우편) 또는 구술(방문, 유선)
5. 기타사항
 -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(신고사항 직권말소)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주시 완산구청 산업교통과(☎063-220-5353)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